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참전명예수당 지급기준 명시〉

■ 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391호)

2026. 3.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김 정 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참전명예수당 지급기준 명시	2

I. 제안경위

1. 제안자 : 이인영의원 등 10인
2. 제안일 : 2025. 11. 19.
3. 회부일 : 2025. 11.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 지급액은 45만원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참전유공자 대다수가 고령으로 신체적·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참전유공자의 영예로운 생활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산정할 때 경제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참전명예수당 지급액 산정 시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경제 상황에 적합한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7항).

Ⅲ. 검토의견: 참전명예수당 지급기준 명시

- 개정안은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 산정 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6조제7항).

현 행	개 정 안
제6조(참전명예수당) ① ~ ⑥ (생 략)	제6조(참전명예수당)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참전명예수당은 월액(月額)으로 지급하며, 그 지급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후단 신설>	⑦ ----- ----- ----- . 이 경우 지급액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현행법은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월 지급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은 그 지급액을 월 49만원¹⁾으로 정하고 있음.

- 참전명예수당은 2002년 월 5만원으로 최초 지급된 이후 2026년 현재 월 49만원으로 인상되었는데, 준거지표나 인상률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예우 및 지원의 원칙²⁾, 사회경제지표, 정치적 고려 등에

1) 2025년 기준 월 45만원에서 2026년 기준 월 49만원으로, 단가 4만원이 인상되었음.

2) 「국가보훈 기본법」 제18조(예우 및 지원의 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한다.

따라 정액 인상되고 있음.

<연도별 참전명예수당 단가>

연도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월단가(천원)	50	50	60	60	70	70	80	80	90	120	120	150	170
연도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월단가(천원)	180	200	220	300	300	320	340	350	390	420	450	490	

자료: 국가보훈부

○ 반면, ‘보상금’의 지급 수준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되어 있어³⁾⁴⁾, 상이 1급 1항 보상금의 기준 금액으로 전국 3인 가구 가계 소비지출액을 활용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생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보상금) ① ~ ③ (생략)

④ 보상금의 지급수준은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지정하여 고시(告示)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全國家口)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⑤ (생략)

4) 동 규정은 2005년 제정된 「국가보훈 기본법」 제19조제1항에서 “국가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의 수준은 전국 가구의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신설된 것임. 그 이전에는 보상금 지급수준을 정하는 지표 없이 지급액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었음.

- 국내 주요 사회보장제도의 급여 조정 지표⁵⁾를 살펴보면 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활용하고 있는데, 물가가 감소하지 않는 이상 매년 일정 수준 증가한다는 점에서 합리적이고 소비자물가 측정에 포함되는 물품 등이 생활 변화를 반영해 주기적으로 변경된다는 점에서 과학적 측면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음⁶⁾.
- 개정안과 같이 참전명예수당 지급액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규정할 경우 수당 지급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와 함께 다음의 사항을 함께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최근 참전명예수당 인상률은 물가상승률을 상회하고 있는 바, 개정안과 같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법률에 명시할 경우 물가상승률과 같은 수준으로 인상될 여지가 있어 오히려 법 개정 취지에 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음.

5) 「국민연금법」 제51조(기본연금액) ②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적용할 때에는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그 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거나 빼되, 미리 제5조에 따른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초연금법」 제5조(기초연금액의 산정) ② 기준연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전년도의 기준연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한다. 이 경우 그 고시한 기준연금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조정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최저보장수준”이란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라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을 말한다.

6) 임완섭 외, 「보훈급여금의 합리적 지급체계에 관한 연구」, 국가보훈처·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p.137.

<참전명예수당 인상률 및 물가상승률 현황>

구 분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참전명예수당(천원)	180	200	220	300	300	320	340	350	390	420	450
수당 인상금액(천원)	10	20	20	80	0	20	20	10	40	30	30
수당 인상률(%)	5.9	11.1	10.0	36.4	0	6.7	6.3	2.9	11.4	7.7	7.1
물가상승률(%)	0.7	1.0	1.9	1.5	0.4	0.5	2.5	5.1	3.6	2.3	-
경제성장률(%)	2.8	2.9	3.2	2.6	2.2	△0.7	4.3	2.6	1.4	2.0	-

자료: 국가보훈부

- 또한, 물가상승률 반영이 최저생활 보장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므로 참전명예수당 지급 수준의 적정성을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목표 금액에 도달할 때까지는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수준의 인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⁷⁾.
- 참고로, ‘보훈급여금의 합리적 지급체계에 관한 연구’⁸⁾는 장기간 소비자물가상승률만 적용시, 생활변화, 삶의 질 수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과거 수준에만 머무르게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지급수준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소득증가

7) 참고로, 우리 위원회에는 참전명예수당 인상의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하려는 개정안이 다수 계류되어 있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0. (생략)

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8) 임완섭 외, 「보훈급여금의 합리적 지급체계에 관한 연구」, 국가보훈처·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p.137

을, 임금증가율, 경제성장률,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중위소득, 최저임금 등 사회경제지표의 변화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상수준을 조정하는 것을 제안함.

- 둘째, 현행 보훈 관계 법령은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4·19혁명공로수당 등 여러 수당을 두고 있으나, 수당의 지급액을 대통령령에 위임⁹⁾하면서 지급액 산정 기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따라서 개정안에 대한 논의 시 다른 수당과의 체계적 정합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에 대하여 국가보훈부는 참전유공자의 영예로운 생활 보장을 위한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재도 물가상승률 등 사회경제지표를 고려하여 인상 수준을 결정하고 있고, 매년 물가상승률 보다 높은 수준으로 인상되고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舊 기획재정부(現 기획예산처)는 참전명예수당은 타 보훈대상자 간 형평성,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고 있으며, 법률에 물가상승률 등 특정지표를 반영하는 것은 타 수당과의 형평성 문제를 유발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무공영예수당) ③ 무공영예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4(4·19혁명공로수당) ② 4·19혁명공로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 의 처
02)6788-5107